

『구미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』 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여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강화하고,
- 2016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여 효율적 조직운영을 도모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- 정원의 총수 조정(안 제2조)
 - 1,627명 → 1,639명(+12명)
 - 집행기관 : 1,599명 → 1,611명
 - 의회사무기구 : 28명(변동없음)
-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 조정(안 제4조 관련 [별표 3])
 - 정원 총계 : 1,627명 → 1,639명(+12명)
 - 일반직 계 : 1,588명 → 1,600명(+12명)
 - 6급이하 계 : 1,488명 → 1,500명(+12명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
- 「지방자치법」, 「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」

- 예산조치 : 비용추계서(붙임)

- 정원 순증에 따른 연간추계 소요인건비 : 2,700,186천원

- 기 타 : 신·구조문대비표(붙임)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

읍면동 복지허브화 선도 자치단체 선정에 따른 맞춤형 복지담당 신설 및 사회복지인력을 증원하고,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임.

- 주요 내용은

- 안 제2조제1호의 집행기관 정원을 12명 증원한 1,611명으로 하고, 안 제4조 별표3 관련, 6급 이하 정원을 12명 증원하는 것임.

- 검토결과

- 본 개정조례안은

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가 읍면동 복지허브화의 선두주자로 구미시를 포함해 전국 30개 시군구의 33개 읍면동을 선정함에 따라 맞춤형 복지담당을 신설하고 읍면동별 복지수요에 따라 복지수급자 다수밀집 등에 사회복지 인력을 증원하는 등 2016년도 기준인건비에 반영된 주요업무 추진인력을 증원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,

- 상위 법령에 위배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됨.
- 참고로, 읍면동 복지허브화는 2014년 7월 전국 15개소에서 시범 사업을 시작했으며, 올해는 전국 30개소에서 모델링 사업이 실시되고 2018년까지 전국의 모든 읍면동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임.